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1.

발 의 자 : 이강일 · 강준현 · 한정애
김남근 · 김현정 · 장종태
박민규 · 양부남 · 손명수
박상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바, 적발, 조사 및 제재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전달, 시세조종 공모, 차명계좌를 통한 주문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.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압수·수색을 통한 물적증거 확보 외에도 혐의자 간 연락관계, 정보전달 경로, 실제 주문자·주문장소 및 이용자 특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‘통신사실확인자료’와 ‘통신이용자정보’가 조사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.

특히 불공정거래 조사는 심리, 계좌추적, 문답 등 여러 단계가 요구되어 수사기관 이첩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, 이 과정에서 통신자료 보관기간(실무상 통상 1년)이 도과하거나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경우 공모관계 및 정보전달 경로의 입증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.

이에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‘통신사실확인자료’(전기통신 개시·종료시간, 발·착신 통신번호, IP주소 등) 및 통신이용자정보(이용자의 성명, 주소 등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함(안 제427조,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).

아울러,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유형(미공개중요정보 이용, 시세조종, 부정거래) 중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위반행위에 사용된 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, 위반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원금 몰수·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, 부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하고자 함(안 제447조의2제2항 등)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7조제1항 중 “이하 이 조에서”를 “이하 이 조,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에서”로 한다.

제3장에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7조의3(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)

① 조사공무원은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(이하 “전기통신사업자”라 한다)에게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(이하 “통신사실확인자료”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위반행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위반행위자의 발견·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·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2조제11호바목·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
2.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(군사법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.

⑤ 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청구를 받은 법원의 관련 자료 보존,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등의 보고·비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,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통지,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,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, 벌칙, 미수범 등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조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3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, 제13조의3, 제13조의5,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검

사 또는 사법경찰관”은 “조사공무원”으로 본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·절차, 제공받은 자료의 보관·관리·폐기 및 그 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7조의4(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요청) ① 조사공무원은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위반행위자의 특정, 소재 파악 또는 증거의 수집·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요청사유, 해당 이용자와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전기통신사업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3조제1항, 제2항,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수사기관등”은 “금융위원장”으로 본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의 방법·절차, 정보의 보관·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
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47조의2제2항 중 “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”를 “제443조제1항제1호부터제9호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몰수·추징에 관한 적용례) 제4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7조(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·수색)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, 제176조, 제178조, 제178조의2,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(<u>이하 이 조에서 “위반행위”라 한다</u>)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<u>이하 이 조에서 “조사공무원”이라 한다</u>)에게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 할 수 있다.	제427조(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·수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---이하 이 조,</u> <u>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에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②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② ~ ⑥ (현행과 같음) <u>제427조의3(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)</u> ① <u>조사공무원은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</u>

우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(이하 “전기통신사업자”라 한다)에게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(이하 “통신사실확인자료”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위반행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위반행위자의 발견·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·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2조 제11호바목·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

2.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

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(군사법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 단서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.

⑤ 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
자료 제공 요청 허가청구를 받
은 법원의 관련 자료 보존, 전
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
자료 제공현황 등의 보고·비
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의 점검, 통신사실확인자료 제
공의 통지, 비밀준수의무 및
자료의 사용 제한, 전기통신사
업자의 협조의무, 벌칙, 미수범
등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
에 범죄조사를 위한 통신사실
확인자료 제공과 관련된 사항
에 관하여는 「통신비밀보호
법」 제13조제6항부터 제9항까
지, 제13조의3, 제13조의5, 제1
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
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검
사 또는 사법경찰관”은 “조사
공무원”으로 본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사실확
인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·절
차, 제공받은 자료의 보관·관
리·폐기 및 그 밖에 통신사실
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필요한

<신 설>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27조의4(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요청) ① 조사공무원은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위반행위자의 특정, 소재 파악 또는 증거의 수집·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요청사유, 해당 이용자와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전기통신사업자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를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하여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83조제1항, 제2항, 제5항부터 제9

제447조의2(몰수·추징) ① (생략) ② <u>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</u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,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.	<u>항까지 및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4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수사기관등”은 “금융위원장”으로 본다.</u> ⑤ <u>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의 방법·절차, 정보의 보관·관리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447조의2(몰수·추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44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